瑞山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2. 19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2. 19

라. 上程日字 : 1998. 2. 26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稅務課長 安光來)

가. 提案理由

o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서산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o 제명을 『서산시세감면조례』에서 『서산시시세감면조례』로 변경

o 조례안제24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조항을 신설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토록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o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

-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o 본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52 호
의결년월일	1999. 2. . (제 회)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2. 19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

제출년월일 : 1999. 2. 19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관련 표준안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 이에맞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함(안 제24조, 신 설).

3. 참 고

가.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

나. 참고자료 : 표준안 (충청남도 세정 13400-190)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산시세감면조례"를 "서산시시세감면조례"로 한다.

제1조중 "서산시세"를 "서산시시세"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서산시세감면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산시세감면조례	제명 서산시시세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산시시세------ ---------- ---------- ----------
<신 설>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